

# 서울연구원 · (사)한국사회과학연구회 미래 성장과 발전 연구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서

서울연구원과 (사)한국사회과학연구회(이하 '양 기관' 이라 한다)는 국가와 지방의 미래 성장과 발전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, 관련분야의 연구협력 활성화를 통해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(이하 '이 협약' 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은 양 기관의 주요 연구분야인 사회, 경제, 미래세대 등에 대한 주요 이슈 발굴, 공동연구, 학술행사를 추진하고, 연구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력 범위)** 양 기관은 아래 각 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.

1. 사회, 경제, 미래세대 등에 대한 주요 이슈 발굴과 공동연구 시행
2. 공동이슈 또는 연구결과 등에 대한 공개 학술행사(세미나, 정책토론회 등) 개최
3. 연구과제 자문·심의 등 전문 인력 상호 교류
4. 학술자료,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공유
5. 기타 양 기관의 상호 관심분야 협력

**제3조(협약 준수)** 양 기관은 이 협약 사항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.

1.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2. 양 기관은 상호간에 이견이 존재할 경우에도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4조(경비 부담)**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**제5조(효력 발생 및 협약 기간)**

1. 이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협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.
2. 양 기관이 협약 해지에 합의하거나,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.

**제6조(비밀 유지)** 양 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서비스 제공, 연구 활동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.

**제7조(협약서 교환)** 양 기관은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상호 합의하고,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약서를 1부씩 보관한다.

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기관의 대표는 이 협약서에 서명하였다.

2018년 5월 16일

서울연구원

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

원장 서왕진

(사)한국사회과학연구회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매화로51, 302호

이사장 허상수

---

(사)한국사회과학연구회 · 서울연구원  
미래 성장과 발전 연구 활성화를 위한 상호  
협력 업무협약서

(사)한국사회과학연구회와 서울연구원(이하 '양 기관' 이라 한다)은 국가와 지방의 미래 성장과 발전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, 관련분야의 연구협력 활성화를 통해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(이하 '이 협약' 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양 기관의 주요 연구분야인 사회, 경제, 미래세대 등에 대한 주요 이슈 발굴, 공동연구, 학술행사를 추진하고, 연구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 범위) 양 기관은 아래 각 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.

1. 사회, 경제, 미래세대 등에 대한 주요 이슈 발굴과 공동연구 시행
2. 공동이슈 또는 연구결과 등에 대한 공개 학술행사(세미나, 정책토론회 등) 개최
3. 연구과제 자문·심의 등 전문 인력 상호 교류
4. 학술자료,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공유
5. 기타 양 기관의 상호 관심분야 협력

제3조(협약 준수) 양 기관은 이 협약 사항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.

1.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2. 양 기관은 상호간에 이견이 존재할 경우에도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4조(경비 부담)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**제5조(효력 발생 및 협약 기간)**

1. 이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협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.
2. 양 기관이 협약 해지에 합의하거나,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.

**제6조(비밀 유지)** 양 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서비스 제공, 연구 활동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.

**제7조(협약서 교환)** 양 기관은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상호 합의하고,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약서를 1부씩 보관한다.

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기관의 대표는 이 협약서에 서명하였다.

2018년 5월 16일

**(사)한국사회과학연구회**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매화로51, 302호

이사장 허 상 수

**서울연구원**

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

원장 서 왕 진

---